

지방자치 Focus
2014. 10



책읽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목 차]

- I . 왜 책읽는 마을인가
- II . 지역공동체 중심장소로서 작은도서관
- III . 작은도서관 현황 및 운영실태
- IV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지방자치 FOCUS 제85호(2014. 10.)

내용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연구원 김도형
02-3488-7348, enscape@krila.re.kr

배포문의 발간 담당자(02-3488-7300)

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책임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김도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연구원)

책읽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I. 왜 책읽는 마을인가

■ 책읽는 도시, 책읽는 마을

- 최근 들어 '책읽는 도시'를 표방하며 독서진흥 시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여럿 등장하고 있음
 - 2014년 9월에는 전국의 책읽는 도시 가운데 서울 관악구, 경기 군포시, 전남 순천시 등 18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전국 책읽는 도시 협의회'를 구성함
 - 책읽는 도시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독서운동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잡고 전국 규모의 협의회를 조직함
- 책읽는 도시는 책읽기의 고전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의 접근을 시도한 공간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책읽는 도시의 성공적 추진은 마을 단위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책읽는 마을만들기가 선행되어야 함

'책읽는 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로고



■ 책읽는 마을만들기와 작은도서관

-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책을 매개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로 마을만들기 운동을 전개함
 - 책읽는 마을만들기의 목표는 책읽기로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음

- 지역주민들에게 책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책읽는 마을'의 정체성을 만들어감
- 책읽는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이 마을의 중심장소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마을 어디에서든 접근하기 좋은 작은도서관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장서 규모와 관계없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 만족하는 특성이 있음
 - 즉 작은 규모와 장서 수를 가진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을 선호함

II. 지역공동체 중심장소로서 작은도서관

1.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특성

■ 작은도서관 정의

-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곳”(김준, 2006)
- “법에서 정한 최소규모 이상의 시설·자료·인력을 갖추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며 비영리로 지역주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및 정보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의 생성체이자 소규모의 생활친화적인 독서·교육·문화 공간”(유양근·박송이, 2010)
- “지역공동체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적이고 창의적 운영방식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기초 문화기반시설”(조윤희, 2012)

책읽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도서관법」 개정(2009. 3) 이전, 지자체 조례상 작은도서관 정의

-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 기반시설”(제주, 2008년 4월 제정)
-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독서 공간 제공,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 친화적인 문화기반시설”(전북 익산, 2006년 12월 제정)
-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기반시설”(전남 신안, 2009년 1월 제정)
-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에 인접하여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평생학습 공간”(경남 김해, 2008년 6월 제정)

■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 마을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 선행연구와 작은도서관 조례에서 검토한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정의에서 ‘작은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중심 장소’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됨
-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자료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수행함
 - 일자리, 부동산 등과 같은 지역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으로 기능함
- 작은도서관은 누구든지 지식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공공도서관에 비해 설립이 쉽고 접근성이 좋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환경을 제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함
- 작은도서관 운동의 마을만들기적 특성
- 김소희(2013)는 삶터 가꾸기, 공동체 이루기, 사람 만들기 등 마을만들기 운동론과 연계하여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경험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을 제시함
- 작은도서관의 기능으로 책이 있는 공간,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는 공간, 이웃과 만나 공동체를 경험하는 공간이어야 함을 주장함
- 민간 주도로 이어온 작은도서관 운동이 공공의 영역으로 유입되면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우려하며 지역주민에게 더 마음을 주고, 경쟁보다 공동체를, 다툼보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동의 의미를 잊지 않고 첫 출발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함

2. 관련 법규

- 도서관법
- 2009년 3월 법 개정 시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를 법률적 개념으로 처음 사용함
- 「도서관법」 제2조(정의) 제4항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정의하고, 이 범주에 '작은도서관'을 포함
 -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

책읽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

구 분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물 면적	33㎡ 이상	264㎡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60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기본장서 3,000권 이상, 연간증서 300권 이상

자료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 작은도서관진흥법

-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정부의 국정과제로 작은도서관 조성이 채택되면서 2012년 2월 작은도서관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됨
 - 작은도서관의 정의 및 설치기준, 조성과 운영 등에 대해 이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을 따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함
-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시하기도 함

Ⅲ. 작은도서관의 현황 및 운영실태

1.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시·도별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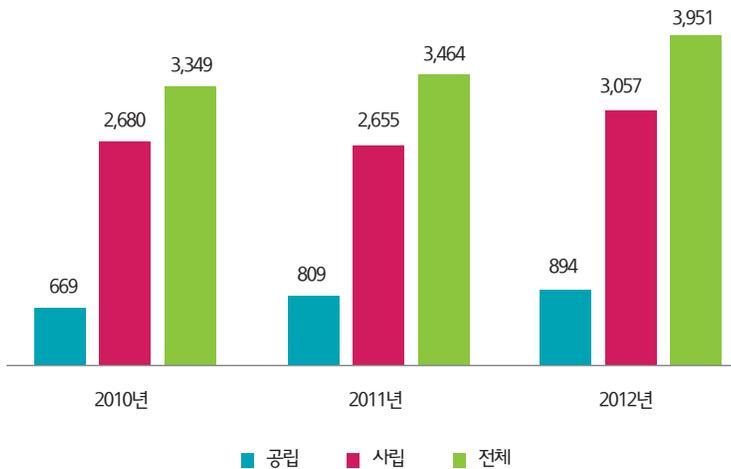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2013)가 발표한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작은도서관은 전국에 3,951개가 운영되고 있음
 - 2010년과 2011년에는 전국 작은도서관의 수가 각각 3,349개와 3,464개로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광주와 경기, 충북 등 일부 지역이 2011년 감소하다 2012년 증가한 점을 제외하면, 작은도서관의 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해마다 증가

■ 설립주체별 운영현황

- 2012년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이 각각 894개와 3,057개로 나타나, 대부분(77%)의 작은도서관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공립 작은도서관은 2010년과 2012년 사이 기간 동안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음
 - 2012년 사립 작은도서관 수는 2010년에 비해 14.1% 증가했으나, 2011년에는 소폭 감소함
- 공립 작은도서관의 비중이 높은 시·도와 사립 작은도서관의 비중이 높은 시·도 사이에 공립 대 사립 비율의 편차가 나타남
 - 가령 2012년 현재 서울과 전북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비중이 각각 37.9%와 38.0%를 보인 반면, 제주의 경우 그 비중이 2.3%를 나타내 사립 작은도서관이 전체의 97.7%를 점유함

책읽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설립주체별 작은도서관 수 변화 추이(2010~2012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3)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지원 현황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은 사립이 공립에 비해 그 비율이 낮음
 - 2012년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은 대부분에 해당하는 82.3%가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은 반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절반 수준에 가까운 53.1%만이 지원 받음
- 2012년 현재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 2,358개 가운데 예산지원을 받는 곳이 전체의 7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서지원, 인력지원, 문화프로그램 지원,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지원의 내용에는 도서관 증축비 지원, 직무교육, 도서관 업무 지원, 행사 연계 등이 해당함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의 수는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인력지원, 예산지원, 장서지원,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2배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증가하였음
 - 특히 예산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은 2011년 34.3%에서 2012년 80.3%로 크게 증가하였음

전국 작은도서관의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지원현황(2010~2012년)

단위 : 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지원 받음	1,674 (50.0)	494 (73.8)	1,180 (44.0)	1,942 (56.1)	653 (80.7)	1,289 (48.5)	2,358 (59.7)	736 (82.3)	1,622 (53.1)
지원 받지 않음	1,280 (38.2)	135 (20.2)	1,145 (42.7)	1,291 (37.3)	133 (16.4)	1,158 (43.6)	1,430 (36.2)	136 (15.2)	1,294 (42.3)
모름, 무응답	395 (11.8)	40 (6.0)	355 (13.2)	231 (6.7)	23 (2.8)	208 (7.8)	163 (4.1)	22 (2.5)	141 (4.6)
전 국	3,349 (100.0)	669 (100.0)	2,680 (100.0)	3,464 (100.0)	809 (100.0)	2,655 (100.0)	3,951 (100.0)	894 (100.0)	3,057 (100.0)

주 :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 여부 항목에 '모름, 무응답'이 있는 이유는, 본 통계가 개별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응답 결과를 집계하여 생산되었기 때문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3)

2.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현황

■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작은도서관'으로 검색한 결과, 광역지자체 가운데 작은도서관 조례가 제정된 곳은 2014년 10월 현재 모두 12개 시·도임
 -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작은도서관 조례가 없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충남, 경남 등 5개 시·도이며, 이들 중 일부는 도서관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의 내용을 다루기도 함
- 작은도서관 조례는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례의 명칭은 지원 조례, 진흥 조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시·도마다 다양하게 나타남

책읽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광역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조례의 명칭(2014년 10월 현재)

조례 명칭	해당 지자체	지자체 수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울산, 경기, 강원, 충북	4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 대전, (경북)	3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세종, 전남	2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제주	2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광주	1

주 : 괄호가 포함된 조례 명칭의 해당 지자체는 괄호로 표시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 작은도서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12개 시·도에 대해 조례의 구성 조항을 분석한 결과,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작은도서관의 기능, 지자체의 책무, 예산의 지원 등은 거의 모든 조례에서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조례의 목적 또는 정의 조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이라는 점임
 - 조례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지역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명시된 10개 광역지자체의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대체로 7개로 분석됨
 - 이들 7개 기능 중에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은 모든 지자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장소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음

광역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조례의 구성 조항 및 내용(2014년 10월 현재)

구분	목적	정의	기능	책무	계획 수립	예산 지원	협력 체계	운영 교육	후원 장려	평가 포상	기 타
인천	○	○	○	○	○	○	○	○	○	○	지원센터 설치·운영, 실태조사
광주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세종	○	○	○	×	△	○	×	×	×	△	작은도서관 선정기준, 등록, 등록취소, 운영위원회
경기	○	○	○	○	○	○	△	×	×	○	분과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강원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전북	○	○	○	○	△	△	△	○	×	×	공간 및 위치, 설립 기준, 운영인력, 도서관 운영, 운영위원회
전남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제주	○	○	○	○	△	△	△	○	×	×	공간 및 위치, 설립 기준, 운영인력, 도서관 운영, 운영위원회

주 : 독립 조항으로 규정(○), 다른 조항에 내용 명시(△), 없음(×)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 계획 수립과 관련한 내용은 모든 광역지자체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 명칭과 수립 주기, 포함 사항 등이 시·도마다 제각각임

책읽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인천은 작은도서관의 종합발전계획이 포함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광주는 작은도서관 활성화계획을, 대전은 작은도서관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의 명칭이 지자체별로 다양하고 수립 주기도 각기 다름
- 작은도서관 조례가 제정된 12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예산지원이 독립된 조항으로 명시된 시·도는 10곳으로 확인됨
 - 전북과 제주는 예산지원이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자치단체장의 책무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대전은 도서관 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에 대해, 전남은 사립 작은도서관 또는 독서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우선 지원의 대상을 언급한 지자체도 있었음
-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된 광역지자체의 조례는 5개에 불과하지만, 이를 다른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까지 포함하면 모두 11개로 나타남
 - 강원, 충북, 전남 등은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자치단체장의 책무 조항과 작은도서관의 기능 조항에 명시함

광역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조례에 규정된 작은도서관의 기능(2014년 10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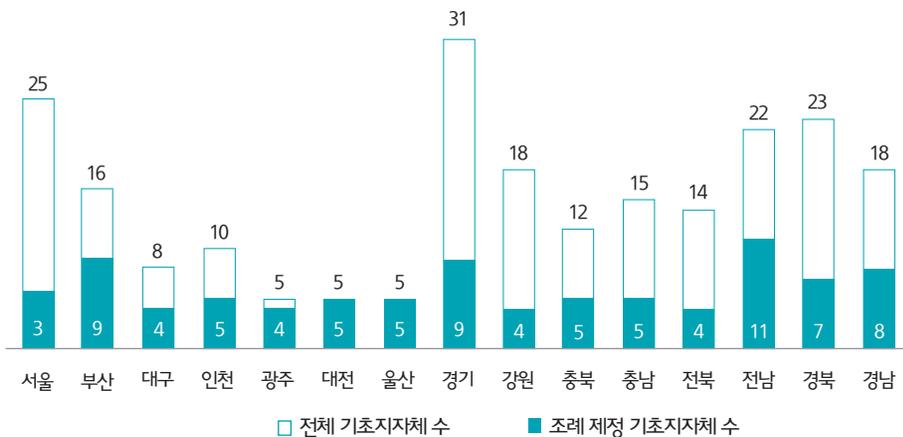
작은도서관의 기능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자료 및 정보 수집·제공	○	○	○	○	○	○	○	○	○	○
지역문화 진흥	×	○	○	○	○	○	○	○	×	○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	○	○	○	○	○	○	○	○	○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	○	○	○	○	○	○	○	○	○	○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	×	×	○	○	×	×	○	○	×	○
공공·학교도서관과의 연계협력 구축	○	○	×	×	○	○	○	○	○	○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	○	○	○	○	○	○	○	○	○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작은도서관'으로 검색한 결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작은도서관에 관한 독립된 조례가 제정된 곳은 2014년 10월 현재 모두 88개 지자체로 확인됨
 -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와 서귀포를 제외한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작은도서관 조례가 제정된 기초지자체의 비율은 38.8%를 나타냄
- 작은도서관 조례의 제정은 2006년 12월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13년에는 22개로 정점을 이룸
 - 이는 2012년 2월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이후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작은도서관 설립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됨

시·도별 기초지자체 수 및 조례 제정 기초지자체 수(2014년 10월 현재)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3.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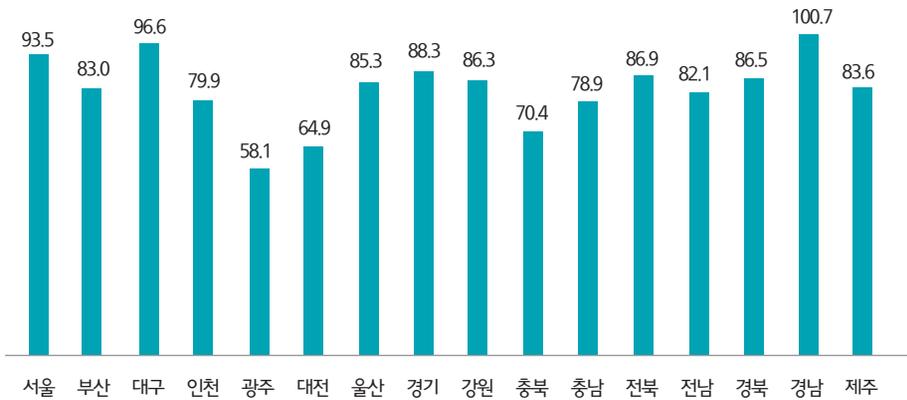
■ 진단평가방법

- 문화체육관광부(2012)는 2011년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의 대상인 전국 3,349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연구》를 진행
-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영역을 인적자원, 시설 및 설비, 정보자원, 예산, 이용자 서비스, 교류 협력 등 모두 6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18개 진단항목으로 배점함
 - 총 200점 만점으로, 점수 범위에 따른 등급은 140점 이상 200점 이하가 A등급, 100점 이상 140점 미만이 B-1등급, 70점 이상 100점 미만이 B-2등급, 50점 이상 70점 미만이 C-1등급, 50점 미만이 C-2등급 등으로 구분됨

■ 진단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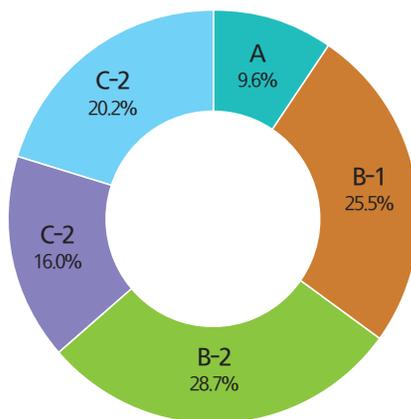
- 작은도서관 운영진단 결과 총 200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85.5점이며, 전국 3,349개 중 평균 이상의 작은도서관은 1,595개(48%)이고 평균 이하는 1,754개(52%)로 나타남
 - 전국 작은도서관의 36%는 운영 진단 결과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C등급으로 분류되므로 전체 작은도서관 3개 가운데 한 곳은 운영 상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설립주체별 운영 진단의 결과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평균이 115.2점, 사립 작은도서관의 평균은 78.1점으로 진단함
- 작은도서관의 수가 3,000개를 넘지만 작은도서관이라 말할 만한 데는 반도 채 안 되는 실정임
 - 공립 작은도서관이 사립 작은도서관보다 평균이 높지만 200점 만점에서 점수 평균이 100점을 웃도는 수준임
 - 이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수로 판단됨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결과 시·도별 평균(200점 만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결과 등급별 비중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

IV.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마을공동체 중심장소로서의 정체성 정립

■ 생활환경과 가까운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육성

- 지역주민들이 어디에서든 접근이 편리하도록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을 입지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작은도서관이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마을 단위 독서사랑방으로 육성
 -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빌게이츠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은 마을의 작은도서관”이라 한 말은, 가까운 주거지에서 지식정보와 생활문화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의 유용성을 대변
- 모든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을 공립으로 조성하는 것은 예산의 제약이 따를 것이므로, 사립 작은도서관 가운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을 선정해 마을공동체의 중심장소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함
 - 마을공동체 중심장소로서 잠재력, 도서관 운영 철학,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도서관 운영에 대한 주민의 참여 정도, 인근 도서관과의 서비스 도달범위 중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 도서관을 선정함

■ 마을의 특성을 살린 작은도서관 만들기

- 마을의 특성을 살린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의 주요 요소인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문화를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적 성격을 살려나간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임
- 마을의 지리적 여건과 인구 특성을 고려해 특화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차별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

-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정 등이 많이 분포하는 마을의 경우 각각 이들 특성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한다면, 해당 계층에게 필요한 도서와 지식정보를 보다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안산 다문화 작은도서관은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설립된 작은도서관으로, 지역주민과 외국인 간 사회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장소로 평가받고 있음
-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작은 박물관이 함께 조성된다면, 타 지역주민들에게 마을을 방문 시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작은도서관과 작은박물관이 마을의 랜드마크로서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요소가 건축디자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마을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함
- 공공시설 및 학교 도서관의 작은도서관화
- 시·군·구 청사,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문화회관 등 공공시설과 학교에 자리 잡은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
 - 건물 내에서 도서관 시설의 공간은 업무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 받지 않는 곳,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소에 배치되어야 함
 - 건물 깊숙이 도서관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업무 또는 교육활동에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지역주민들의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1층 입구에 도서관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 초등학교는 공간적으로 근린생활권과 일치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마을 단위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학교 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함

책 읽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및 학교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는 소속감이 증진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형성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2. 지역커뮤니티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활성화

■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도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공유함
 -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도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작은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함
-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의 어우러짐이 전제되어야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가꾸는 영혼의 쉼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작은도서관의 설립은 공공도서관의 분포와 연계체계 등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체계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 도서관의 장기계획을 검토한 후 작은도서관 계획을 수립함

■ 지역커뮤니티를 구현하는 마을사랑방 기능 수행

- 지역주민 교류의 사랑방으로 기능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통합에 기여하고 주민들 간 공감대 형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작은도서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장소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작은도서관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곧 사람 간의 커뮤니티가 해체됨을 의미하는 것임
 - 책과 지역문화를 엮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지적 인프라의 산실이라 말할 수 있음
-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와 함께 공부하며, 전시회 및 공연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운영함

- 기존의 작은도서관 공간을 확대해 북카페, 전시장, 공연장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카페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마을축제와 같이 지역주민들 간 친목과 화합에 기여하는 공동체행사를 주도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구현하는 장소로 창조해 나감

■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작은도서관은 지역을 담아내는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자가 되어 작은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공동체 학습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되어야 함
- 지역주민과 밀착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함
 - 지역공동체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지역문화운동, 지역공동체 학습 등을 전개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하도록 함
- 작은도서관의 주 이용자가 학생인 점을 감안, 도서관의 학습 기능 강화를 위해 커뮤니티 내 학교와 연계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방과 후 독서·논술 지도, 다양한 과목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사교육 절감 및 학생들의 돌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정보수집 및 제공 기능 강화

-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은 도서관이 갖는 기본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이며, 이러한 배경에서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센터에서의 민원서비스를 작은도서관에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자리, 부동산, 지역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

책읽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정보격차로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복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검색 교육을 실시함

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 작은도서관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다수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 민·관 단체들이 모여 도서관 운영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함
 - 일반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동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문고 회장, 구의원 등 지역단체 임원과 도서관 자원봉사자 대표, 동아리 회장, 작은도서관 관장 등으로 구성됨
 -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나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작은도서관 이용자들과 함께 운영위원회 참여를 유도함

■ ‘한 책, 한 마을’ 운동의 전개

-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책, 한 마을’ 운동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책읽는 마을의 분위기를 조성함
 - ‘한 책, 한 마을’ 운동은, 시민이 같은 책을 읽으며 교훈과 감동을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지역과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토론하며 해결해 나가자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마을 단위에 도입하는 것임
 -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해 2001년 시카고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산시가 2003년 처음 시작해 이후 여러 도시로 확산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이 같은 책을 읽는 활동은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정서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외에도 북스타트 운동, 1주민 1책 기부 운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음
 - 1992년 영국에서 출범한 북스타트 운동은 유아기 때부터 책과 가까이해 평생 책읽는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운동으로, 마을 단위에 도입할 수 있는 좋은 독서운동으로 판단됨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의 공간으로 육성
- 작은도서관 인력 문제의 해결책을 재능기부·자원봉사 활성화의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작은도서관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서를 포함한 인력의 확충 문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
 - 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연계해 재능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초·중·고등학교 은퇴 교사들에게는 작은도서관에서 방과후 교사로 활약하도록 함으로써 노년에 의미 있는 봉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작은도서관 파트타임 인력으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함
 - 작은도서관에 북카페를 설치해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주민이 작은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사서양성 프로그램 운영

4. 작은도서관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지자체 지원 강화
-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지자체 차원에서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의 제시 및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등을 담은 작은도서관 조례의 제정이 요구됨
- 작은도서관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도서관 지원에 대한 기존 조례의 내용에서 ‘...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책임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지자체 지원을 가능한 범위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의 확보를 현실화하도록 함
-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명시된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을 지자체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 제6조에는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 성공 모델 확산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
- 작은도서관이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을 컨설팅하는 가칭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지자체가 주도해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작은도서관의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확산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박람회'의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음
- 지원센터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주관해 모범적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적인 지자체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통해 개별 작은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2006,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김소희, 2013,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청어람미디어.
- 김재철, 2013, 〈마을공동체 구심체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방안〉, 《FOCUS 광주》 6.
- 김준, 2006, 〈'작은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 《도서관계》 3월호.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유양근·박송이, 2010,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1).
- 조윤희, 2012,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 모형〉, 《디지털도서관》 66.

2013

- 통권 469 지방 3.0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와 전략 연구
- 통권 470 정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 통권 471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 통권 472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 통권 47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 통권 474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 통권 475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통권 476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 통권 477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 통권 478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방안
- 통권 479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해 주민안전망 구축 방안
- 통권 480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4대악) 역할 및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 통권 481 지방재정관리체계 개선방안-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중심으로-
- 통권 482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 통권 483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 통권 484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기능 강화방안
- 통권 485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 차등보조율을 중심으로
- 통권 486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개선방안
- 통권 487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 통권 488 지방분권형 특화산업 육성방안
- 통권 48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불균형 해소방안
- 통권 490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 개선방안
- 통권 491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2012

- 통권 458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시스템의 다양화 방안
- 통권 459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구성과 활용 방안
- 통권 460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 통권 461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 통권 46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 통권 463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 통권 464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 통권 465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 통권 466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 통권 467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 연구총서 (통권 468) 새로운 지방예산제도

2011

- 통권 45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 통권 452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 통권 453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 통권 454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 통권 455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 통권 456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 연구총서 (통권 457) 지방세제의 선진화 -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서초동) TEL. 02-3488-7399 FAX. 02-3488-7309